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지 방 공 기 업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‘주택공급 확대방안*’ 발표(’25.9.7.)

*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간소화 추진

나.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정비(공공재개발·재건축)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타당성 검토 항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3. 주요내용

가. 공공정비사업 타당성 검토 내용 간소화 근거 신설

- 행안부장관이 공공정비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, 타당성 검토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의2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에 따른 “공공재개발사업” 및 “공공재건축사업” 등 사업의 성격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8조의2(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) ① ~ ⑦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58조의2(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에 따른 “공공재개발사업” 및 “공공재건축사업” 등 사업의 성격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990